

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2. 06. 13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장 병 학 의원의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2년 6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6월 13일

(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장 병 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법률고충을 해소하여 충청북도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상담대상자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(사립학교 포함) 교직원으로 함(안 제2조).
- 상담내용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 관장사무로 하며, 상담 방법은 전화나 방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고, 상담변호사는 상담과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도록 함(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).
- 상담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6조).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김왕년)

- 본 조례 제정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의 비밀유지를 하도록 한 것으로,
-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 사안을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교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양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첨부서류 : 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'교육감'이라 한다)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(사립학교를 포함한다)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담대상자 등) ① 상담대상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한다.

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.

제3조(상담내용) 상담내용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 관장사무로 한다.

제4조(상담방법)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방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·연락처·상담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.

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,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. 다만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에게 제1항의 매체를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.

제5조(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) ① 상담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.

②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상담료) ① 상담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상담변호사는 상담을 이유로 상담인으로부터 상담료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없음